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581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redacted]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5363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세액'란 기재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1

별지

목록

순번	처분일자	세목	세액(단위: 원)
1	2014. 11. 10.	취득세	24,333,100
2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168,790
3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66,610
4		등록세	24,333,100
5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395,090
6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66,610
7		지방교육세	4,866,620
8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079,010
9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6,660
10		농어촌특별세	2,443,310
11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016,870
12	2015. 3. 9.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6,660

끝.